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1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아든자산운용

2. 조치내용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 등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㈜아든자산운용에 과태료 48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(1)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,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,

○ ㈜아든자산운용은 ㈎펀드가 소유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구체적인 사유를 총 2회(2022년, 2023년)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7조 제8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91조 제1항, 제2항